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9월 16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1. 7.) 상정,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0.) 상정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군·특별자치시의 범위 내에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간소하게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설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은 ‘시행계획’과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절차임.

이를 통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농촌특화지구계획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에 관련한 사업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¹⁾, 기본계획에 담긴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지 못하고 특정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사업만 분절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보임.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농촌의 난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에 따라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선택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내용이 간소하고 지역 범위에 제한없는 특화지구계획 제도만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1) 후술할 안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가능함.

있음.

개정안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은 시행계획에 비하여 추가되는 사항이나 의무가 없으며, 내용을 간소화하고 지역적 범위에 제한도 없으므로 계획수립권자 입장에서는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행정적인 편의가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중첩적으로 수립되도록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간 수립 시점에 따라 내용이 충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의 혼동, 복잡해진 사업구조로 인한 사업 추진 및 행정에 복잡성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농촌특화지구계획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으나,²⁾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사업추진 방식’,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특화지구계획에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종합하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

2) 후술할 안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추진에 대한 계획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농촌공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적시성을 제고할 할 필요성과,

농촌특화지구에 대해서만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정비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 간소화된 절차로 인하여 기존 절차(시행계획)의 실효성 및 활용도가 적어질 수 있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특화지구계획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